

전주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가단54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8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가단5459 판결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0. 12. 8.

판 결 선 고 2021. 2. 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 1. 30. 접수 제11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8.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생산약품 또는 수입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9. 6. 27. 거래 종료 시 E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 13,292,325원이 존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E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213096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9. 21. ‘E와 D은 연대하여 13,292,32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D은 2020. 1. 29.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2020. 1. 30. 접수 제112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원고 외에도 피고에 대하여 2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F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10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할위반의 주장(피고가 2020. 3. 17. 제출한 답변서 요약표에 ‘관할 위반 주장’에 ‘ ’표시만

하였으나, 토지관할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인 전주지방법원이므로, 피고의 위 관할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F조합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D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대물변제)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수익자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채무부담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D에게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전혀 없는 점, 피고도 D과 그 배우자 G에게 2014. 4. 8.부터 2017. 8. 25.까지 회사운영자금으로 합계 2억 3,000만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

별 지 목 록

1. 전라북도 완주군 대 106㎡

2. 전라북도 완주군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단독주택(창고) 2.32

2층 단독주택 52.51㎡

3층 단독주택 43.85㎡

이상 끝.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말소등기의 등기관리자는 원고가 아닌 D이므로, 이를 오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